
문서번호 : 16-05-디지털정보위원회-01
수 신 : 각 언론사 제위
발 신 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(위원장 이광철 변호사)
제 목 : [취재요청] ‘테러방지법’ 헌법소원 기자회견
전송일자 : 2016. 5. 30.(금)
전송매수 : 총 2매

[보도자료]

‘테러방지법’ 헌법소원 기자회견

1.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(위원장 이광철)는 지난 3월 3일 시행된 <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>, 속칭 ‘테러방지법’에 대해 2016년 5월 31일 오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. 기자회견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<p>일시 및 장소 : 2016. 5. 31. 오후 1시 민변 주최 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회 : 김지미 변호사 발언 : - 여는 말 : 이광철 변호사 - 헌법소원청구 제기의 배경 : 천낙봉 변호사 -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 소개 : 김용민 변호사 - 당사자 발언 : 문규현 신부</p>

3. ‘테러방지법’의 위헌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가. 첫째, 테러의 개념(제2조 제1호), 테러위험인물의 개념(제2조 제3호),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“관련 정보 수집”, “추적” 등의 개념이 추상, 포괄적이어서 불명확·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. 이는 결국 법집행자(국정원)의 자의에 따라 테러방지라고 하는 법 본래의 목적이 아닌 국내의 정치·사회적 현안에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.

나. 둘째,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·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습니다. 특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치를 담은 제9조, 그 가운데에서도 제9조 제4항의 “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”의 경우가 두드러집니다.

다. 셋째, 테러방지라는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규제조치 간의 형량관계에 있어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.

4.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. 끝.

2016. 5. 30.
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

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

이 광 철 (직인생략)